

1. 개정이유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및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개정
에 따라 농업용으로 사용되는 지게차가 건설기계에서 제외되고 농업기계
로 전환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배출가스 인증 대상인 농업기계에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에 따른 농업용 지게차 추가(안 별표 5 제2호나목)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
칙」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농림축산식품부, 국토교통부 합의

라. 기 타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5 제2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나. 농업기계의 종류

제작일자	종 류	규 모
2013년 2월 2일 이후	콤바인, 트랙터	원동기 정격출력이 225kW 이상 560kW 미만
2013년 7월 1일 이후	콤바인, 트랙터	원동기 정격출력이 19kW 이상 560kW 미만
2015년 1월 1일 이후	콤바인, 트랙터	원동기 정격출력이 560kW 미만
2025년 4월 이후	콤바인, 트랙터, 지게차	원동기 정격출력이 560kW 미만

비고

지게차의 경우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제1조의2에 따른 농업용 지게차에 한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